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전 찬 결 의원)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3. 8. .

발 의 자 : 전찬걸 의원

찬 성 자 : 18인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서식 산란장 등에 침적된 폐어망·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대게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대게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 연근해 해양 오염방지 도모 및 수산자원 보호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환경 생태계 보호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대게자원의 지속적·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어업인은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
- 다.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지원대상은 대게어장과 연접된 연안 시장·군수로 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대게어장 관리실태 및 조사·평가를 위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참조

4.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 붙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 없음

6. 참고사항 : 붙임참조

-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 명부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산란 서식장에 침적된 폐어망·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원함으로써 대게 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연근해 해양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게”란 대게,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제2조 제3호에서 명시한 지역에서 주로 수확되는 일반대게를 말한다.
2. “수산자원 보호”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대게어장”이란 대게가 주로 서식하는 연안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별표12] 주11)의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안쪽 해역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를 말한다.
5. “어장정비”란 대게어장 내 대게어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대게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을 장려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와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게어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인의 책무) ① 어업인은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어망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업인이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망·어구의 수거 비용
2. 그 밖에 대게의 자원조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대게 어장과 연결된 연안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관리실태 및 조사·평가 등)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조사·평가하도록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구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대게조업 어선의 내역

2. 연간 버려지는 폐어망 실태
3. 대게어장에서 수거된 폐어망 수거·운반·소각·매몰처리 실태
4.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
5. 그 밖에 대게어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책) 도지사는 제7조의 조사·평가에 따라 대게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사업
4.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한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용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또는 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또는 구역에서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된 해역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 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② 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 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⑥ 삭제 <2007.8.3>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망·어구의 수거 비용(기 운영중), 대게의 자원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신규 재정 부담은 발생되지 않으며, 기 운영중에 있는 사업의 비용 추계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대게어장정비						
	○						
	소계(a)						
세출	○ 대게어장정비	300	400	400	400	400	1,900
	○						
	소계(b)	300	400	400	400	400	1,900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90	120	120	120	120	57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210	280	280	280	280	1,330
민간							
기타							
합계		300	400	400	400	400	1,900

5. 작성자 : 수산진흥과 백상립(☎ 950-253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비 사용목적

-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망·어구의 수거 비용

☐ 2013년 비용추계비 : 3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210)

- 재원 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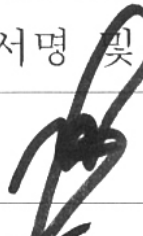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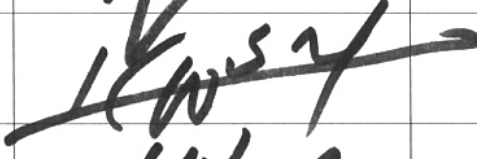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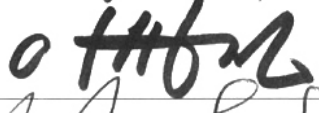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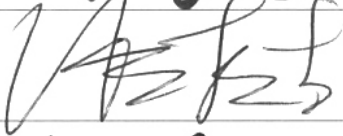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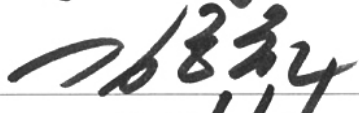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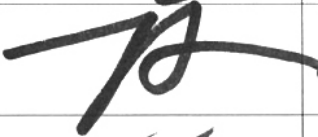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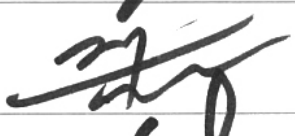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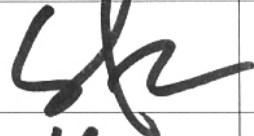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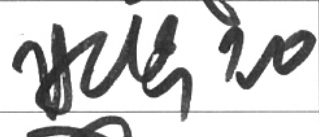
☐ 항목별 비용추계 방법

-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망·어구의 수거 비용 :
비용 추계비의 100% 소요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 서명명부

성명	서명 및 날인	비고
김관길	김관길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서명명부

성명	서명 및 날인	비고
김 기홍		
이 시하		
이 흥진		
홍 진규		
장병석		
김 봉수		
김 종현		
나 기보		
강 명석		
정 영근		
박 광남		
변 우정		
배 수향		

